

1. 개정이유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845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 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방법 규정(안 제11조의 2 개정, 안 제11조의6 신설)
- 가정에서 분리 보호 중인 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서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함
- 나. 아동 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액 변경(안 제19조제2항 개정)
-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의 자산형성사업 정부 지원
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의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
원하던 것을 2배로 지원하도록 함
- 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3 개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록 아동복지시설의 건강 및 급식위생 등 운영기준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호”를 “제3호 및 법 제15조의5 제2항”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과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제11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보호대상아동의 면접교섭 방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제11조의2 제4호에 따른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과 같은”을 “의 2배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호아동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른 필수·임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 제목을 급식위생 관리로 하고, 가목, 나목, 라목을 각각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과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설장 및 시설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종사자(이하 “시설장 등“이라 한다)는 시설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95조제2항에 따라 다목부터 사목까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규정은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한하며, 50명 미만의 시설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나. 시설장 등은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영양사가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설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설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시설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바.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제작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자. 아동복지시설의 먹는물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추 두어야 한다.

별표 3 제6호 가목 중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동양육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수용”을 “보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관리 계획) -----제3호 및 법 제15조의5 제2항-----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아동과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설>	제11조의6(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 방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제11조의2 제4호에 따른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과 <u>같은</u>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③ · ④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의 2배에</u> <u>해당하는</u> -----. ③ · ④ (현행과 같음)
--	--